

사랑과 신뢰, 번영과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회

# 월간 입법동향

- 2026년 4월호 -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 <b>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b>	
1. [제정(안)] 보호지역 기본법	4
2. [제정(안)] 범죄예방기본법	8
□ <b>타 시·도 입법동향</b>	
1. [제정]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2. [제정]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17
□ <b>국회입법</b>	
1. [이슈와 논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19
2. [NARS info]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바탕으로	26
□ <b>국외동향 및 시책</b>	
◇ [최신외국정책정보]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29
□ <b>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b>	
•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사례 •	
1. [미국 로스앤젤레스] 기후 비상사태 동원 조례	36
2. [아일랜드 더블린] 더블린 시 개발 계획 (제3장 기후위기 대응)	43
□ <b>유권해석 동향</b>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5건 (광역시·도 1건 / 기초 시·군·구 4건)	63
□ <b>경기도의회 주요 입법예고</b>	
◇ 의원발의 17건(제정조례안 13건, 개정조례안 4건)	85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 1 [제정(안)] 보호지역 기본법

[제안일 2026. 1. 9] [의안번호 제2215946호, 2026. 3. 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 ○ 제안이유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전 지구 육상·해양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복원)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생태계 관리를 위한구역 지정·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됨에 따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정·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정부가 10년마다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관계 기관은 5년마다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활동 효과성을 평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 배분·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지역 정책 심의·조정, 관리 효과성 평가, 갈등 조정,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국가는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복원사업을 시행·지원하고, 개발사업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 바.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 제공·접근성 보장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 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제DB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
- 아.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 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보상, 보호지역 관련 교육·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연구 및 국제협력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자. 국가가 보호지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차.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후변화 영향, 복원 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이번 ‘보호지역 기본법안’은 보호지역 관련 규정이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이용에 관한 통합적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음. 특히 2030년까지 육상·해양의 30% 이상을 보전·복원한다는 이른바 ‘30×30 목표’ 이행,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보상·지원 제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별 생태·환경보전 사업 중심 접근을 넘어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강조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고 함)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고 함)에 따라 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생물다양성센터 설치·운영, 조사·교육·홍보,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조례의 중심축은 ‘생물다양성 일반정책’에 있고, 개별 보호지역의 지정·분류·관리기준·평가·주민참여·보상 등 보호지역 관리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향후 「보호지역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 경기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만으로는 법률상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첫째, 현행 경기도 조례는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보호지역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 체계에 연동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만 다루고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지역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 및 관리체계를 전제로 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안’의 입법 취지와 비교할 때, 현행 조례는 보호지역에 관한 규율 범위와 개념 구조가 보다 제한적임. 따라서 향후 상위법 제정 시에는 생물다양성법 중심의 현행 규율 구조에서 나아가,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보호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보호지역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보호지역 관리계획 및 관리효과성 평가 체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안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고,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와 관리활동의 효과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또한 평가 결과를 차기 관리계획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해 현행 경기도 조례는 5년 단위의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규정은 두고 있으나, 개별 보호지역별 관리계획이나 관리효과성 평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따라서 향후 경기도 조례 개정 시에는 도가 관여하는 보호지역 또는 도 차원의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 이행점검, 성과평가 및 공개의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순한 선언적 보전정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셋째, 이해관계자 참여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안은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과 접근성 보장,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음. 현행 경기도 조례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전에 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전략 수립 단계에 한정된 규정으로 보호지역 지정·관리 과정 전반의 참여권 보장과는 범위가 다름. 특히 보호지역은 사유재산권, 토지이용, 주민 생업과 직접 연계되므로, ‘보호지역 관리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민·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갈등 조정, 정보공개 등 절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생태적 연결성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안은 국가기본계획에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통로 설치 등 연결성 개선사업의 시행·지원 근거와 기반시설 설치자의 영향 최소화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 경기도 조례는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 사업수단이나 관리체계로 연결하는 조문은 충분하지 않음.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 간 생태축 연계, 단절 구간 복원,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조정 등의 역할이 요구되는바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보호지역 간 연결성 확보, 훼손지 복원, 광역 생태축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통합정보 관리와 조사·연구 기반 강화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안은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호지역 지정·관리 현황, 생물다양성 변화,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 재정 투입 및 성과 등 정보의 등록·갱신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경기도 조례는 생물다양성 조사, 생물종 목록 구축, 조사인력 양성 등을 생물다양성센터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기초조사 기능은 갖추고 있으나, 보호지역 단위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공개체계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센터 또는 유관 체계를 활용하여 도내 보호지역 현황, 생태계 변화, 복원사업, 주민참여 및 재정지원 실적 등을 집적·관리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향후 국가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여섯째, 지역사회 지원과 재정수단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안은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지역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지역 지정·관리·운영, 보상, 교육·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연구, 국제협력, 지역 사회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호지역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육성,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역량강화, 보전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경기도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이나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 지정·관리로 인한 지역주민 부담과 혜택 공유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 사업비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 참여형 보전사업, 생태관광 연계, 지역 일자리, 주민 인센티브 등 ‘보전과 지역상생’의 관점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금 설치의 상위법 제정 여부, 기존 환경 분야 기금과의 관계, 재정 운용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역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원봉사, 생태해설, 공동 모니터링, 지역사회 기반 보전활동 등을 포함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경기도 조례도 주민 교육·홍보 규정은 두고 있으나, 보호지역 보전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조는 명확하지 않음. 경기도가 향후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경우, 교육·홍보를 넘어 도민 참여형 모니터링, 생태복원 자원봉사, 보호지역 해설 프로그램, 지역사회 파트너십 사업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상위법 취지와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요컨대, ‘보호지역 기본법안’은 기존의 생물다양성 일반정책을 넘어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리체계, 관리계획과 평가, 주민참여, 정보공개, 생태적 연결성, 지역사회 지원 및 재정기반을 포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경기도의 경우 현행 조례만으로도 일부 정책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보호지역 자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 제정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① 보호지역 개념과 관리체계의 명확화, ② 보호지역별 관리계획 및 효과성 평가 근거 마련, ③ 주민·토지 소유자 참여 및 정보공개 절차 보강, ④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연결성 복원사업 근거 마련, ⑤ 지역사회 상생지원 및 참여형 보전사업 제도화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별도 조례 제정 또는 현행 조례의 전면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제정(안)] 범죄예방기본법

[제안일 2026. 1. 15] [의안번호 제2216060호, 2026. 3. 2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범방지대책 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정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를 총괄하여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범죄예방 활동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 범죄예방정책 마다 각각의 법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범죄예방 등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총괄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 법규에 따라 추진하던 각각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통합·정비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의 정의(안 제2조)

범죄예방이란 각종 범죄의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 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지역별

균형, 재원 마련 노력, 범죄예방 관련 자료 표준화 및 실태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및 공공부문·민간부문 간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1)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2) 범죄예방 기본계획에는 범죄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주요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정책과제별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교육·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청소년비행 예방,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마.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1)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법무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 3) 법무부장관은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범죄예방정책 분석·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바. 범죄예방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1)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회를 설치함.
- 2) 협의회는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조정,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조정·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사. 범죄예방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 등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아. 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 설치(안 제10조)

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정책협의회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함.

자. 범죄예방지역협의체 설치(안 제11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장·지방검찰청검사장·시도경찰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예방지역협의체를 설치함.

차. 범죄예방 실태조사(안 제14조)

- 1)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범죄예방 활동 현황, 범죄예방 관련 통계 분석, 지역별·유형별 범죄예방 지원 상황 등 종합실태를 조사·연구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2)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의 장에게 범죄예방 관련 통계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함.

카.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16조 ~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안 제18조 ~ 제21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는 한편,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소 대학 등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2) 협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3)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파. 자원봉사단체등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22조 ~ 제25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범죄예방 관련 국가기관, 자원봉사단체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단체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조 례 :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

○ 이번 '범죄예방기본법안'은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시행 계획, 중앙-지방 간 추진체계, 실태조사, 교육·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 자원봉사단체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의 법안임.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개별 범죄예방정책이 여러 법규에 분산되어 있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점과, 법무부 중심의 통합적 컨트롤타워와 범죄예방정책의 연계·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법 취지로 제시하고 있음. 즉, 이 법안은 특정 범죄유형이나 특정 취약 계층 지원을 넘어 범죄예방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데 의미가 있음.

- 이에 비해 현행 경기도 조례 2건은 모두 개별 영역 중심의 대응 조례라는 특징을 가짐.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이하 '사회적약자 범죄예방 조례'라고 함)는 사회안전약자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사업계획 수립, 안심물품 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장애인 범죄예방 조례'라고 함)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상담, 신고 체계, 모니터링단, 피해자구조단,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 체계는 통합적인 범죄예방 정책의 틀보다는 특정 집단별 지원에 초점을 둔 수요맞춤형 분절적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첫째,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 조례 또는 최소한 상위 기본법과 연동되는 총괄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정책의 기본원칙, 계획 수립, 협의체, 실태조사, 교육, 환경개선, 민간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경기도 조례는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지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특정 집단 중심의 개별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범죄예방 일반정책의 목표·원칙·추진체계·부문 간 연계에 관한 통합적 규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향후 상위법 제정 시에는 개별조례를 그대로 병존시키는 방식만으로는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경기도 범죄예방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조례의 제정 내지 총괄적 조항의 신설 등의 입법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계획체계의 정합성 확보와 관련하여,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경기도 조례 중 장애인 범죄예방 조례는 이미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체계를 두고 있어 상위법 체계와 비교적 정합성이 높은 편임. 반면 사회적약자 범죄예방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 규정은 있으나, 범죄예방 일반정책과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체계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향후에는 경기도 범죄예방 시행계획과 개별 조례상 사업계획·기본계획의 관계를 정리하여, 상위 기본법에 따른 도 시행계획 아래에서 각 취약계층별 조례가 세부계획으로 작동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 차원의 추진체계와 협의기구 정비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안은 시·도지사 소속 범죄예방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시행계획 수립·추진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장, 지방검찰청검사장, 시·도경찰청장,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 2건은 모두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두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또는 기관 간 연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범죄예방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상설 협의체 구조까지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특히 사회안전약자 조례는 중앙정부,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조례도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사업 협력에 가까움. 따라서 향후 상위법이 제정 되면 경기도는 법정 범죄예방지역협의체와 현행 개별 조례상 협력체계를 어떻게 연계할지, 나아가 기존 자치경찰·복지·여성·청소년·장애인 분야 협의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를 방법론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넷째, 실태조사와 자료기반 정책 강화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안은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범죄예방 활동 현황, 범죄예방 관련 통계 분석, 지역별·유형별 지원 상황 등을 조사·연구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해 현행 경기도 조례 중 장애인 조례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며, 사회안전약자 조례는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범죄예방 정책을 취약계층별 지원사업의 집합으로 운영하기보다, 범죄유형·지역특성·피해취약계층·환경요인 등을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범죄취약지역, 범죄피해 취약계층, 범죄예방 사업 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섯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현행 조례의 사업수단 간 연계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 보면, 법안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등의 정책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사회안전약자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중심의 개인 단위 예방수단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 조례는 교육·상담·신고체계·모니터링단 등 대응·지원 수단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음. 즉 현행 조례들은 개인 맞춤형 예방 및 피해 지원에는 의미가 있으나, 지역 공간구조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이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함. 향후 경기도는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안심귀갓길, 조명·CCTV·비상벨 등 생활안전 인프라, 지역공간 분석 기반 환경설계,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율하거나 기존 조례와 연동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제도화가 경기도 조례에 보완될

필요가 있음. 법안은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성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상 등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면서 민간을 범죄예방 사업의 주요 수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 경기도 조례 2건은 모두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자원봉사단체나 주민 참여 조직을 범죄예방 정책의 독자적 주체로 설정하거나 지원·포상 체계까지 체계화하고 있지는 않음. 특히 사회안전약자 조례는 공공 기관 간 협력의 성격이 강하고, 장애인 조례도 관련 기관·시설 중심의 연계에 무게가 실려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 자율방범, 시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 취약계층 보호 네트워크, 민간 순찰·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종합조례나 개별 조례 보완을 통해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현행 개별 조례의 존치 필요성과 통합 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약자 범죄예방 조례는 사회안전약자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형 조례로서 입법 목적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성이 높으며, 장애인 범죄예방 조례는 장애인의 특수한 취약성과 피해구조를 반영한 조례로서 피해지원·교육·신고·권리보장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독자적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상위법 제정 이후에도 이들 조례를 일률적으로 폐지하거나 흡수하기보다는, 경기도 범죄예방 기본조례가 총괄체계를 담당하고, 개별 조례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규정으로 존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계획체계, 용어 정의, 협력체계, 실태조사, 평가 방식 등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 및 총괄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범죄예방기본법안'은 기존의 개별·분절적 범죄예방정책을 넘어, 범죄예방 전반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계획체계, 협의체, 실태조사, 환경개선, 민간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기본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경우 현행 조례 2건이 취약계층 대상 개별 지원조례로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범죄예방 일반 정책을 총괄하는 조례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상위법 제정 시에는 ① 경기도 범죄예방 기본조례 또는 총괄 규정 마련, ② 도 시행계획과 개별 조례상 계획 간 관계 정비, ③ 범죄예방지역협의체 등 지역 추진체계의 제도화, ④ 실태조사 및 자료통합 관리 근거 강화, 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제도적 보강, ⑥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사회 참여 기반 확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아울러 현행 개별조례들은 향후에도 특화조례로서 존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괄조례와 개별조례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정비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입법동향

### 1 [제정]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 2. 25.] [부산광역시조례 제7882호, 2026. 2. 25., 제정]

####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정이유

- 재난 경험자 및 유가족의 심리적 외상과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피해자의 일상 복귀 촉진과 사회심리적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역할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단장 및 위원의 임명·위촉, 임기와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서면심의,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의 위임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재난 이후 심리적 외상과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특히 중앙·지방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총괄·조정 기능 등을 명시하여 재난심리지원 기능을 조직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점을 주목할 만함.
- 이는 기존 재난심리지원이 기관별로 분산 수행됨에 따라 중복지원 또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응한 것으로, 심사보고서에서도 재난 초기 대응부터 중장기 회복까지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음.
- 반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생활안정지원·치료비·장례비 등 금전적 지원 중심의 사후지원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피해자의 권리 선언 및 인권보장 원칙을 규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리회복을 전담하는 조직적·운영적 체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재난피해자의 심리회복 지원을 단순한 권리보장 또는 재정지원의 범주를 넘어, 계획 수립·지원 연계·기관 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추진체제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해구호법」에서 시·도 심리지원단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부산 조례는 공무원뿐 아니라 교육청·경찰·공공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다층적 구성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 위원회 구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심리지원 수행 주체를 포함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 하는 취지로 보임. 경기도 역시 위원회 또는 지원단 구성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현장기관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위원회와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 구조는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실무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음. 경기도 조례에서도 정책 심의 기능과 실무 조정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적 운영체계를 도입할 경우,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서면심의,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전문기관 검토 요청 등을 명문화한 점은 재난 상황의 긴급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한 것으로, 경기도 입법 시에도 긴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산 조례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별지로 규정하여 위원 위촉 단계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최근 공공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 경기도 역시 재난지원, 연구용역, 민간협력사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조례 차원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조례안은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내용이나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함. 이는 경기도 입법 시 단순한 조직 설치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단계별 지원체계까지 포함하는 보다 입체적인 규정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요컨대, 부산광역시 사례는 재난피해자 지원 정책을 ‘금전적 지원’ 또는 ‘권리 선언’ 중심에서 벗어나 ‘심리회복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로 전환한 입법사례로 볼 수 있으며, 경기도 역시 기존 조례 체계를 보완하여 재난심리회복 기능을 조직·운영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됨.

## 2 [제정]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4.] [인천광역시조례 제7706호, 2026. 3. 4., 제정]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정이유

○ 「간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인천광역시 간호정책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간호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협력체계의 구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인천광역시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양성·처우 개선·근무환경 향상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동 조례는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협의회,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협력체계 구축, 행정·재정 지원 및 위탁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특징임.
- 이는 「간호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에게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상위법의 정책체계를 지방 차원의 실행체계로 연결한 입법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 조례는 간호인력 지원정책을 시행계획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교육·훈련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야간근무 간호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제도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한편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수급 개선, 교육·훈련, 경력단절 완화, 장기근속 지원, 근무환경 개선, 교대·야간근무 건강 보호 등 정책수단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조례와 기능적으로 상당 부분 중복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 입법에 있어서는 인천 사례를 단순히 따라 별도 간호인력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보건의료인력 조례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즉, 현행 조례 내 간호인력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 간호법 관련 특례 조문을 추가하는 방식, 또는 별도 조례 제정 시 적용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 경기도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시행계획 중심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간호법」 제35조에 따른 5개년 단위의 간호종합계획과의 직접적인 연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간호인력 분야의 정책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시행계획 내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의 제도 정비가 요구됨.
- 또한 인천광역시 조례는 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되 기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자문기구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경기도 역시 다양한 조례 규정을 통해 동일한 입법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간호인력 정책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이 입법체계상 보다 타당한 대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간호법」은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력단절 방지, 고충상담, 인권 보호, 교대근무 개선 등 보다 구체적이고 확장된 정책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조례는 이를 포괄적 지원 조항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정책 구체화 여지가 남아 있음. 경기도 역시 향후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 지원, 권리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전담간호사 등 법률상 제도를 반영한 세부사업 근거를 조례 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요컨대, 인천광역시 사례는 「간호법」 시행에 대응하여 간호인력 정책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구조화한 입법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이미 보건의료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의 기능 보완 및 간호법과의 연계성 강화 방향의 입법적 대응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59호 (2026. 01. 1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소방예산 중 지방비의 비중이 높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소방사무·인사·지휘체계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방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며, ② 소방사무의 책임구조 명확성과 ③ 인사·지휘권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방업무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I.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배경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업무가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확장되면서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하였다. 그러나 국가직 전환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다수 나오고 있다.<sup>1)</sup>

최초에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신분으로 운영되다가 1970년 서울·부산에서 자치소방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직·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고, 1992년 시·도 광역자치 소방체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sup>2)</sup> 소방공무원 중 국가직이 소수, 지방직이 다수이고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로 분류된 소방체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였다.

2009년 전국 소방공무원 1만여 명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인 사례<sup>3)</sup>와 같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지역마다 처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 소방공무원 처우 및 소방서비스 수준의 편차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는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소방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sup>4)</sup>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선정되어 추진되던 중에, 2019년 강원도 초대형산불 발생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주목을 받으며 2019년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인력 등의 변화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국가직 전환 이후 변화

#### 1. 국가직 전환 관련 주요 법률 개정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등 7개 관계 법률이 제·개정되었고,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주요내용

법률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제3조) • 대통령·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제6조)
지방공무원법	• 지방소방공무원 삭제(제2조)
지방국가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 삭제(제2조)
소방기본법	•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지휘·감독(제3조제3항) • 시·도지사 직속 소방본부(제3조제4항) •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 배치(제3조제2)
지방교부세법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제4조 및 제5조) •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초과 부분 소방인력인건비로 우선 충당(제9조제4)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제3조) • 인건비계정, 소방정책 사업비계정으로 구분(제4조) • 소방사무 관련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제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 지원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치·운영 가능(제10조)

※ 주: 지방국가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을 약칭한 것임.  
※ 자료: 소방청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2020. 3.17. 바탕으로 재작성함.

1) 강지은, “죽어야 영웅되는 소방관들…‘PTSD’ 시달려도 국가는 외면”, 『뉴스스』, 2025.11.9; 박진영, 「화재진화수당 25년째 ‘동결’…소방관들,李 대통령에 처우 개선 촉구」, 『세계일보』, 2025.9.27. 등 언론보도 다수 참조.  
2) 박창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4권 제6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20, p.114.  
3) 김달중, 「소방공무원 3년간 미지급 수당 2505억원」, 『아시아경제』, 2009.12.3; 김경일, 「[Local 발언대] 소방공무원 열악한 처우 개선돼야」, 『세계일보』, 2011.12.9. 등 언론보도 다수 참조.  
4) 유정현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249), 2011.9.21.

## 2. 인력·예산 측면에서의 변화

인력 운용의 측면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통일되어 지역 간 소방 인력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소방인력 확충 계획<sup>5)</sup>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인력 총원 결과, 소방공무원 수는 2017년 4만 8,042명에서 2024년 6만 6,802명으로 증가하였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2017년 1,091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감소하였다.

예산 및 재정 측면에서는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면서 시·도 소방예산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지방 소방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직 전환 이전인 2019년 기준 국비 지원은 3,852억원에서 2025년 8,696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총 소방예산은 5조 5,065억원에서 8조 1,478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sup>6)</sup>

구분	국비	지방비	총 소방예산
2019	385,276	5,121,293	5,506,569
2020	664,223	5,100,260	5,764,483
2021	994,682	5,694,661	6,689,343
2022	882,155	6,309,155	7,191,310
2023	962,021	6,768,216	7,730,237
2024	817,855	7,277,323	8,095,178
2025	869,686	7,278,152	8,147,838
2026*	979,823	7,615,115	8,594,938

※ 주: 2026년은 예산안 기준임.  
※ 자료: 소방청,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5.12.9.

## III. 국가직 전환의 한계

### 1.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소방예산

국가 예산에서 지방으로 배분되는 소방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2019년 국비

5) 2022년까지 2만 명을 총원한다는 목표 아래, 2017년 3,921명, 2018년 3,737명, 2019년 4,850명, 2020년 4,365명, 2021년 3,774명, 2022년 1,891명이 총원됨.

6) 소방안전교부세(시·도 총 교부금으로 소방·안전분야를 합산한 금액 기준)는 법률 개정 이전인 2018년 4,173억원, 2019년 3,838억원이 교부되다가, 2020년 6,851억원으로 증가, 2021년 1조 352억원, 2022년 8,853억원, 2023년 9,867억원, 2024년 8,325억원, 2025년 9,856억원이 교부됨.

비중이 약 7%에서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11.5%, 2021년 14.9%까지 상승하였으나, 2022년부터 감소하여 2025년에는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특히 인건비의 경우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5,476억원이 교부되나 전체 인건비 예산은 6조 3,632억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약 8.6%에 불과하다.

표 3 연도별 지방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2019~2026)  
(단위: 억원)

구분	소방안전 교부세	지역자원 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총계
2019	0	2,095	34,420	452	36,967
2020	3,298	3,430	33,238	581	40,547
2021	5,657	2,966	37,150	692	46,465
2022	4,918	3,047	42,149	1,146	51,260
2023	5,481	2,999	46,087	665	55,232
2024	4,776	2,975	51,835	434	60,020
2025	5,476	3,371	54,228	557	63,632
2026*	5,496	3,412	56,434	208	65,550

※ 주1) 2026년은 예산안 기준임.  
주2)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 자료: 소방청,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5.12.22.

### 2. 지역 간 격차 해소 부족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감소하였으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하다.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024년 기준 1,255명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396명을 담당하고 있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sup>7)</sup>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별로 차이가 있다. 피복비(1인당)는 최저 부산·제주 25만원, 최고 울산 70만원으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위탁교육비(1인당)의 경우에도 최저 부산 4만 1천원, 최고 충북 42만 8천원으로 1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7) 국가직 전환 전인 2019년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은 각각 서울(1,329명)과 전남(538명)으로 약 2.5배 차이가 있었음.

표 4

시·도 본부별 1인당 지원경비 편성 현황(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피복비	위탁교육비	건강검진비
서울	455	220	500
부산	250	41	350
대구	457	249	355
인천	355	134	353
광주	500	285	360
대전	280	86	374
울산	700	204	350
세종	324	193	302
경기	586	109	500
강원	395	175	200
충북	461	428	314
충남	350	150	383
전북	390	289	280
전남	400	232	300
경북	600	135	536
경남	350	151	530
제주	250	80	408
창원	400	266	320

※ 자료: 소방청,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자료」, 2025.12.22.

### 3. 소방사무, 인사·지휘체계 측면의 한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소방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sup>8)</sup>로 규정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8)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시·도지사가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의 성격은 재원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sup>9)</sup>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소방사무가 지방사무이고 지방정부(시·도 소방본부)가 맡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10)</sup> 인사·지휘권의 측면에서는 인력 운영에서 소방청장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여 재난현장에서 지휘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sup>11)</sup>

## IV. 개선과제

### 1.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및 자원 확보방안 모색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비에 의존하여 소방공무원 신분체계와 재정 부담 주체 간의 불일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대규모 인력 충원에 따라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으나, 국비 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신규 인력 일부에 한정<sup>12)</sup>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은 다소 제한적인 실정이다. 국가의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확보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소방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방재정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소방분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연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구조는 태생적인 불안정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재원 확보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sup>13)</sup>, 소방발전기금의 설치<sup>14)</sup>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9) 사무는 일반적으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 등으로 구분함. 국가사무의 경우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도 가급적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리고 단체위임사무의 경우는 중앙과 지방이 분담함(최성우·전성만, 「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 연구: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 p.15.).

10) 양기근·홍영근·윤상기,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사무의 합리화 방안」,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2 No.6, 한국융합과학회, 2023, p.156.

11) 유상엽,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 자료, 2025, p.16.

12)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당시 전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기보다는, 2017년부터 추진한 현장부족 인력 충원에 대응으로 추가 인건비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성격이 강했음(김성주·여효성, 「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2020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p.32.).

13) 화재보험금과 같이 소방안전서비스의 주요 수혜자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화재보험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해외 사례로서 미국, 뉴질랜드, 독일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한재명,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p.15.).

14) 소방발전기금의 재원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고층빌딩의 재산세, 화재보험료의 일부 등이 제시됨(이정희,

## 2. 소방사무의 책임구조 및 법적 지위 명확화

소방사무의 범위가 화재진압을 넘어 사회적·자연적 재난 전반으로 확대된 현실을 소방사무 분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sup>15)</sup> 그런데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소방 관계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16)</sup>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소방사무의 국가·지방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고, 그 법적 지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3. 인사·지휘체계의 일관성 확보

소방청을 중심으로 인사·지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인사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형재난 대응 부서 관련 인사권 또는 인사 승인권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sup>17)</sup> 지휘권과 관련하여서는 시·도지사의 소방 지휘·감독권을 평상시로 국한하는 방안<sup>18)</sup>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특성과 일부 소방사무의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완전한 조직 일원화가 어렵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sup>15)</sup> 「소방발전기금 설치 필요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자료, 2020, pp.33-35.

<sup>16)</sup> 한국정책학회(2024)는 소방청 소관 20개 법률, 총 451개 사무를 법령상 행위 주체,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분류한 결과, 국가사무 194개(43%), 공동사무 107개(23.7%), 지방사무 150개(33.3%)로 분류함.

<sup>17)</sup>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 소방사무를 삭제하는 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57), 「지방자치법」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667)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됨.

<sup>18)</sup> 유상엽, 앞의 글, p.19.

<sup>19)</sup> 박창순, 앞의 글, p.121.

## ◇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

### -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바탕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96호 (2026. 1. 30.)



## 여전히 취약한 보행자 교통안전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4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은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황

| 교통사고 및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현황 |



※ 자료1: 경찰청,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2,523명, 2013년부터 12년 연속 감소 추세, 2025.4.3  
※ 자료2: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제도 정착의 장애 요인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보행자가 '동행하려고 하는 때')



▶ 보행자가 횡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횡단보도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고위험성이 유추될 수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위반을 단속

→ '사고위험성이 유추될 수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면 운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으며, 특히, 우회전 상황에서는 운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저조한 것으로 확인

계획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증설이 지연되고 있음

| 전국 우회전 신호등 설치 현황 |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

변경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제도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전체 교육·홍보의 95% 이상이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 매체에 집중

→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제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차량 일시정지 제도 교육·홍보 현황 |

	2023년	2024년	2025 (10월)
TV	326	1,776	216
신문	323,329	1,826	22,301
라디오	886	939	288
전광판	4,983,300	130,859	314,846
홍보전단	3,199,589	2,644,260	2,059,833

※ 자료: 경찰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하여야 함



보행 취약계층 지역 우선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 검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 끝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교차로 회전반경을 축소하는 방안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장치 설치  
가로수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교통섬을 철거하거나 가까운 곳에 교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 저감시설 설치 \*과속방지턱의 경우 평면만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구조

# 국외동향 및 시책

## ◇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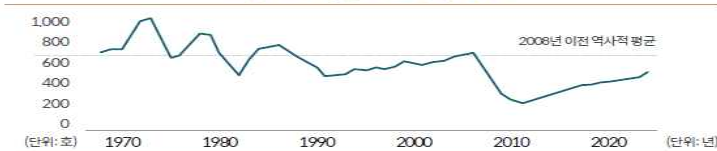
국외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2호[통권 제26호] (2026. 2. 9.)

미국의 주택시장은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진과 인구 구조 변화로 위기가 심화됨.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공급 확대’ 정책이 주목받고 있으나, 추가적인 정책 지원 없이는 주택의 경제적 부담능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부담능력에만 초점을 둔 접근법 역시 단독으로는 지속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려움. 이에 미국의 주·지방정부들은 공급 확대 정책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 모델을 시도하고 있음.

### I. 주택시장 현황<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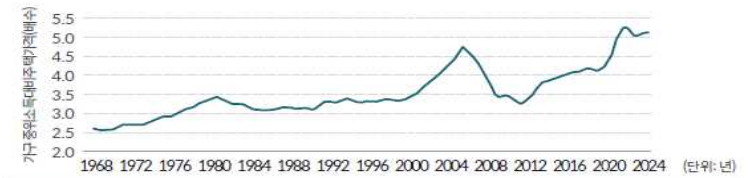
-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은 대침체 이후 장기간 누적된 공급 부진과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구매의 핵심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수요로 인해 수백만 호의 공급 부족 상황에 처해 있음.
- 주택 부족 사태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으로, 2025년 4월 기준 미국의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sup>2)</sup> 가구중위소득 대비 주택가격(중위 판매 가격)도 약 5배로 역사상 최고수준에 근접함.<sup>3)</sup>
-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2021년 ‘주거비 부담(cost-burdened) 가구<sup>4)</sup>가 4,200만(30%)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주택의 부담가능성 문제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함.

인구 10만 명당 연간 주택 건설



자료: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3, 2025). America's Housing Crisis, in One Chart.

가구중위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표(기준점: 1984년=100)



주: 표 일부 인용.

자료: CBRE Investment Management. (August 14, 2025). Digging Out of the U.S. Housing Affordability Crisis.

### II.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sup>5)</sup>

- 미국에서 주택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최근에 주목받는 정책은 △용도지역제(zoning)와 토지이용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신속화 △개발 부담금 인하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임.
- 그러나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부담가능주택을 실제로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없이는 주거비 부담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움.
- 반대로, 주택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만 초점을 두어 금융 지원이나 보조금을 강화 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외한다면, 공급 규모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토지 가격이나 건설비 상승을 초래해 한정된 공공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미국 지자체들은 공급 확대 정책에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 모델을 시도하고 있음.
- 아래에 소개할 정책 사례들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적정 수준의 지원 규모를 설계하며 △간소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부담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임.

1) U.S. Chamber of Commerce. (September 3, 2025). The State of Housing in America.

2) S&P Dow Jones Indices LLC. (2025). S&P CoreLogic Case-Shiller U.S. National Home Price Index [CSUSHPINSA] [Data set]. FRED,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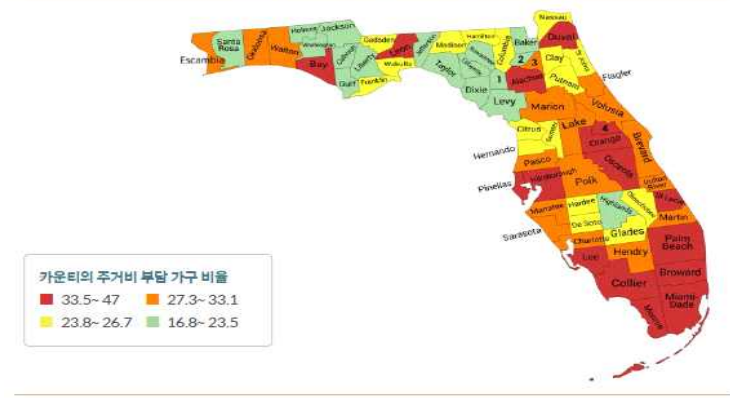
3)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3, 2025). America's Housing Crisis, in One Chart.

4)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 주택담보대출, 관리비 등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

5) Hornung, D., & Shroyer, A. (October 29, 2025). Affordable abundance: How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pairing abundance-style reforms with affordability incentives. Urban Institute.

정책 수단	정책 개요	대표 사례
용도지역제 개혁	부담가능주택 개발 사업에 용도지역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플로리다주 「지역거주법」: 용도지역 개혁과 재산세 감면을 결합하여 소득계층 혼합형 다가구 주택 개발을 촉진
공공토지 활용	활용도가 낮은 공공토지에 부담가능주택 확대	하와이주: 장기 임대 프로그램(SB 865), 공공주택청에 개발 권한 확대(SB 2251)
저비용 대출 및 지원 회전자금	지자체가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주택 사업에 우대 조건의 대출기관 혹은 투자자 역할을 수행	채터누가시 주택개발기금: 2,000만 달러 규모의 개발 기금으로 소득계층 혼합형 주택 개발자에게 후순위·저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지원 투자자로 참여하며, 공공기관이 일부의 소유권을 유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재산세 및 운영·관리 부담을 낮추는 대신 주택의 부담가능성을 높이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자동 감면 △용도변경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분	일리노이주 부담가능주택 특별평가 프로그램: 지역중위소득 이하 가구용 주택 비율에 따라 재산세 최대 30년 감면 워싱턴 D.C '도심 주택' 사업: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을 경쟁방식으로 선정해 20년간 재산세 감면

플로리다 카운티별 주거비 부담 가구 비율  
(2023년 미국 인구조사국 ACS 기준)



주: ACS: 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 Florida Department of Health. (n.d.). Occupied households with monthly housing costs of 30% or more of household income [Data dashboard]. Florida Health CHARTS. Retrieved January 20, 2026.

### III.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를 결합한 정책 사례)

#### 1. 용도지역제 개혁

- 부담가능주택을 우대하는 용도지역제는 민간 개발자가 일반 주택 개발 사업에 부담가능 주택을 포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인하를 달성함.
- 전통적으로 플로리다는 따뜻한 날씨와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 근무자들의 이주까지 급증하면서 주택 공급위기에 처함.<sup>7)</sup>
- 2022년 기준, 플로리다주 전체 가구의 35%가 주거비 부담 가구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팜비치(Palm Beach) 등 주요 대도시 카운티에서는 주거비 지출이 가구 소득의 최대 46.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sup>8)</sup>
- 2023년 7월, 플로리다주는 용도지역 개혁과 재산세 감면을 결합하여 소득계층 혼합형 (mixed-income) 다가구 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거주법(Live Local Act)」을 시행함.<sup>9)</sup>

6) Ibid.  
 7) Florida Policy Institute. (2023, February 23). Florida's affordable housing crisis.  
 8) Florida TaxWatch. (2025, August 12). Updat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ive Local Act.  
 9) Glazer, K., & McKinless, R. (n.d.).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Live Local Act. Florida Housing Coalition.

- 해당 법에 따라, 총 71세대 이상의 신규 다가구 주택 가운데 최소 40%를 지역중위소득 (Area Median Income, 이하 AMI) 80% 이하 가구를 위한 부담가능주택으로 3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 규정과 관계없이 주거용 주택 개발을 허용함.
- 이러한 사업은 자동 승인(by right)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가 허용하는 최고 밀도·최고 높이 기준까지 건설할 수 있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됨. 재산세 측면에서는, AMI 80% 이하 가구에 임대한 주택에는 재산세 전액 면제, AMI 80~120% 가구에 임대한 주택에는 재산세 75% 감면을 제공함.

#### 2. 공공토지 활용

-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부담가능주택과 소득계층 혼합형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임.
- 대상이 되는 공공토지는 재산세 수입을 창출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 개발에 활용하더라도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음.

- 최근 몇 년간 하와이주는 공공토지와 공공자산을 활용해 영구적으로 부담가능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 조치를 단행함.
  - 상원법안 SB 865(2023년 제정): 주정부 소유 토지에 99년 장기 임대권을 부여해 주택 개발을 장려함.<sup>10)</sup>
  - 상원법안 SB 2251(2022년 제정): 하와이 공공주택청(Hawaii Public Housing Authority)이 농업용 토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지에서 소득계층 혼합형 주택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sup>11)</sup>

### 3. 저비용 대출 및 지분 회전기금

-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민간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최근 이 점을 활용해 주·지방정부가 회전기금(revolving fund) 모델로 소득계층 혼합형 주택 사업에 우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거나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음.
  - 회전기금은 대체로 단기 대출금 형태로 설계되며, 주택 완공 후 대출금(수익금)을 회수해 다음 주택 사업에 재투입함.
- 회전기금 모델은 착공 이전 단계에서 자금 문제로 중단된 사업을 지원하거나, 사업 초기에 대출이나 지분 투자를 제공해 설계부터 인허가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됨.
- 회전기금 방식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개발·소유하는 유형과, 민간 또는 비영리 개발자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아래의 채터누가시 모델은 공공 개발·소유 방식의 대표적 사례임.
- 테네시주 채터누가시는 2025년 1월 2,000만 달러 규모의 주택개발기금(Invest Chattanooga)을 출범함.<sup>12)</sup> 이 기금은 채터누가 주택청 산하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며, 소득계층 혼합형 주택 개발 사업에 후순위·저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함.<sup>13)</sup>
- 전체 세대의 30%를 영구적 부담가능주택으로 제공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건설비의 최대 25%를 약 5% 금리로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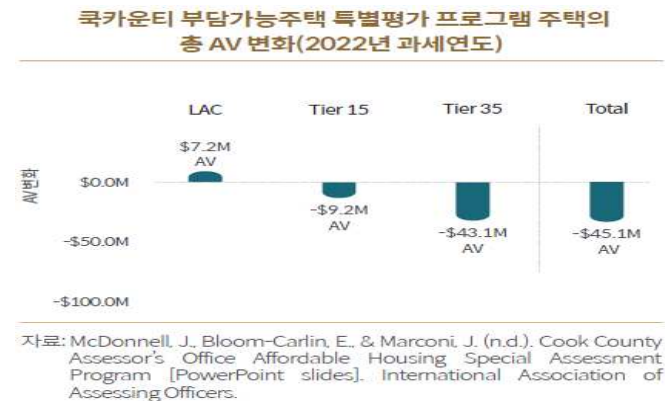
- 테네시주 주택개발기금은 주택 건설 단계부터 건설 이후까지 과반의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개발 이후에도 임대료 수준과 부담가능주택 비율에 대해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소유·운영 관리(public stewardship)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됨.

### 4.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 재산세 및 주택 운영·관리비(operating cost)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부담가능주택의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공급 중심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부담가능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임.
- 재산세 감면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 자동 적용되는 방식과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한 제도로 운용할 수 있음. 또한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음.

#### 1) 재산세 감면 자동 적용

- 일리노이주의 ‘부담가능주택 특별평가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Special Assessment Program)’은 2021년에 통과된 HB2621<sup>14)</sup>(일명 「부담가능주택 종합법안(Affordable Housing Omnibus Bill)」)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주 전역에서 임대주택 신규 공급 및 유지를 위한 재산세 혜택을 제공함.<sup>15)</sup>



10) Jarrett, K. (2023, June 22). Hawaii invests millions to ease housing crisis. The Center Square.

11) S. B. 2251, 2022 Reg. Sess. (Haw. 2022).

12) Think Tennessee. (2025, January 12). Case study: Invest Chattanooga.

13) Invest Chattanooga. (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Partnering with Invest Chattanooga.

14) HB2621의 약칭은 COVID-19 Affordable Housing Grant Program Act임.

15) Housing Action Illinois. (2023, December 19). Affordable housing special assessment program: New state law creates property tax incentive to create and preserve affordable rental homes. Housing Action Illinois Blog.

#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 ◇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사례 ◇

1

[미국 로스앤젤레스] 기후 비상사태 동원 조례

- Climate Emergency Mobilization Commission

### ◇ 번역문

로스앤젤레스 행정법규 제22편에 제35장을 추가하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립하고, 로스앤젤레스 행정법규 제22편 제13장에 제12조를 추가하여 공공사업부 내에 기후위기 대응사무소와 사무소장을 설치하는 조례.

기후 현상이 로스앤젤레스시와 그 시민, 그리고 지역 전체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이며, 모든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도시를 보장하기 위해 의미 있고 공평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비상 대응 체계를 계획, 조정 및 구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로스앤젤레스 시민은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 로스앤젤레스 행정법규 제22편에 새로운 제35장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35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조. 로스앤젤레스 행정법규 제22편 제35장에 제1절, 제2절 및 제3절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35장 제1절 설립 및 조직**

**제22.1500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a) 정의 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 및 구문은 이 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해석된다.

(i) 위원회란 시장, 시의회 의장 및 아래에 정의된 ECCEJR 위원회 의장이 임명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구를 의미하며, 시장과 시의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 헌장 제502조 제 (a)항에 따라 부서 또는 임명직 사무국에 대한 자문기구가 아니며, 이를 관리하지도 않는다.

○ 7세대 이상 다가구 주택 신규 건설이나 대규모 개보수 사업이 대상이며, 부담가능주택 (AMI 60% 이하 가구용 주택) 비율에 따라 주택의 과세평가액(Assessed Value, 이하 AV)을 자동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프로그램은 부담가능주택 비율에 따라 세 단계의 혜택 구조로 설계됨.

- 전체 세대 중 최소 15%가 부담가능주택인 경우(Tier 15): AV 25% 감액
- 전체 세대 중 최소 35%가 부담가능주택인 경우(Tier 35): AV 35% 감액
- 주거비 부담이 특히 심한 지역(Low-Affordability Communities, 이하 LAC)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 : 전체 세대 중 최소 20%를 부담가능주택으로 제공하면, 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AV 감액

○ 일리노이주 쿡카운티(Cook County)의 부담가능주택 특별평가 프로그램 시행 결과에 따르면, 첫해인 2022년 598개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2023년에는 221개 프로젝트가 추가로 참여함.<sup>16)</sup> 2022과세연도의 AV는 전년도 대비 총 4,510만 달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2)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

○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특히 부담가능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그 효과는 단순히 부담가능주택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도심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전환 이전의 건물이 공실 상태이거나 가치가 하락해 재산세 수입이 이미 감소하는 상황이었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음.

○ 워싱턴 D.C.의 ‘도심 주택(Housing in Downtown)’ 공급 사업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20년간 재산세 감면을 제공함.<sup>17)</sup>

○ 지원 대상은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며, 전체 세대의 10%를 AMI 60% 이하 가구용으로 제공하거나 18%를 AMI 80% 이하 가구용으로 제공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16) Cook County Assessor's Office. (2024, September 17). New CCAO data map explores impact of affordable housing program.

17) The Office of the Deputy Mayor for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2024). Washington DC's housing in downtown program: Program Explainer Deck FY24.

- (ii) 캘엔바이로스크린 이란 환경보건위험평가국에서 작성한, 오염원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와 오염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 도구 또는 캘엔바이로스크린의 후속 또는 대체 도구로서 주에서 만든 그러한 지도 도구를 의미한다.
- (iii) 소규모 사업체란 본 법전 제10편 제1장 제4절의 소규모 사업체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소규모 지역 사업체를 의미한다.
- (iv) ECCEJR 위원회란 본 장에 기술된 주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의회의 에너지, 기후 변화, 환경정의 및 하천 위원회 또는 그 후임 위원회를 의미한다.

(b) 이에 따라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본 장 및 시 헌장, 로스앤젤레스시 시법전, 로스앤젤레스 행정법규의 다른 부분에 규정된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가진다. 위원회는 19명의 의결권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c) 임명 및 자격 사항은 헌장 제5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17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 (i) 다음의 세 유서 깊은 지역 부족인 가브리엘리노-통바족, 페르난데뇨-타타비암 선교 인디언 부족, 그리고 추마쉬족에서 각 1명씩 선임되는, 총 3명의 원주민 위원
- (ii) 캘엔바이로스크린에서 점수 또는 구간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리적으로 구별되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7명의 위원
- (iii)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1명.
- (iv) 기후 변화 및 대기질, 유해 물질 그리고 인력 분야의 정책 전문가 위원 3명.
- (v) 소규모 사업체의 소유주인 위원 1명.
- (vi) 24세 미만의 청년 위원 2명. 단, 이들의 임기는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그 직위는 공석이 된다.

- 시의회 의장은 1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 ECCEJR 위원회 의장은 위원 1명을 임명한다.
- 모든 위원은 헌장 제501조제(d)항에 명시된 추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 해임 대상이 임명한 위원은 헌장 제502조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시의회 의장이 임명한 위원은 시의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시의회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ECCEJR 위원회 의장이 임명한 위원은 시의회 과반수 찬성을 조건으로 ECCEJR 위원회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e)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501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위원들의 임기는 각 위원의 임명이 최종 승인된 날에 시작하여 다음 순차적 일정에 따라 5년, 4년 또는 3년의 초기 임기를 거친 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i) 5년 - 가브리엘리노-통바 원주민 위원

- (ii) 4년 - 페르난데뇨-타타비암 선교 인디언 부족 원주민 위원
- (iii) 3년 - 원주민 추마쉬족 구성원
- (iv) 5년 - 지리적으로 구분된 첫 번째 지역사회 위원
- (v) 4년 - 지리적으로 구분된 두 번째 지역사회 위원
- (vi) 3년 - 지리적으로 구분된 세 번째 지역사회 위원
- (vii) 5년 - 지리적으로 구분된 네 번째 지역사회 위원
- (viii) 4년 - 지리적으로 구분된 다섯 번째 지역사회 위원
- (ix) 3년 - 지리적으로 구분된 여섯 번째 지역사회 위원
- (x) 5년 - 지리적으로 구분된 일곱 번째 지역사회 위원
- (xi) 4년 -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 (xii) 3년 - 최초 기후 변화/대기질, 유해 물질 및/또는 인력 정책 전문가 위원
- (xiii) 5년 - 두 번째 기후 변화/대기질, 유해 물질 및/또는 인력 정책 전문가 위원
- (xiv) 4년 - 세 번째 기후 변화/대기질, 유해 물질 및/또는 인력 정책 전문가 위원
- (xv) 3년 -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위원
- (xvi) 5년 - 첫 번째 청년 위원
- (xvii) 4년 - 두 번째 청년 위원
- (xviii) 3년 - 시의회 의장이 임명한 위원
- (xix) 5년 - ECCEJR 위원회 의장이 임명한 위원

예를 들어, 최초 위원이 2021년 12월 1일에 4년의 초기 임기로 임명되었다면, 초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되며, 해당 위원직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은 5년의 임기를 갖게 된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직 위원은 후임자 임명이 승인될 때까지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다.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f) 부서별 자문위원 시장은 시의 모든 부서에서 부총괄책임자급 대표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의결권이 없는 위원 또는 자문역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 제35장 제2절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임무, 책임 및 집행국장

#### 제22.1510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임무.

(a) 위원회는 기후 비상사태, 유독성 오염, 생물 다양성, 관련 환경정의 및 건강 문제(화학 연료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전환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시의 지역사회 및 전 세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시 전역 차원의 동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i) 환경적 피해와 위협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받는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적 또는 공중 보건 영향을 줄이고 완화하기 위해 시의 프로그램, 정책 및 활동에 환경정의의 고려 사항을 통합한다.

- (ii) 시의 의사 결정 과정에 공정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받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구축·강화하며,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한다.
- (iii) 환경정의 및 기후 비상 사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지역사회 및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iv)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연구 및 평가 접근 방식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b) 시 현장 제502조제(a)항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의 권한 하에 공공사업부 내에서 운영 되도록 설립된 기후위기대응사무국에 대한 자문기구가 아니며, 이를 관리하지도 않는다.

(c) 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권고안이 포함될 수 있다. 기후 비상사태,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대응 노력, 온실가스 및 유독성 오염 물질 배출 감소 등의 환경정의 및 환경 형평성 지표 통합, 전략적 이행 계획 및 일정 수립, 비상 및 비상 외 상황에서의 기후 완화, 회복탄력성 및 적응 프로그램, 지역 사회 총회를 통한 공공 교육 및 홍보.

(d) 위원회는 본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지침 원칙 설정, 정기 회의 설정, 의제 공개 및 절차 개발이 포함된다.

### 제22.1511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집행국장

위원회는 집행국장의 지원과 보좌를 받는다. 공공사업부 산하 기후위기대응사무국의 장 또는 그 후속 사무국의 장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의 집행국장을 맡으며, 이는 기후위기대응사무국의 장이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집행국장으로 간주되고, 그 집행국장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집행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있다.

- (a) 위원회의 현장, 조례 또는 명령에 따라 위원회의 집행국장에게 부과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위원회는 그러한 명령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사무국 또는 기후위기대응사무국의 장에 대한 자문기구가 되거나 이를 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 (b)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집행국장은 현장 제508조제(a)항의 목적상 최고행정책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집행국장은 그 밖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고행정책임자 및 서기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그 업무에는 위원회 회의 조정,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및 권고안의 준비 또는 그 준비 지원과 해당 보고서 및 권고안을 시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하는 일, 그리고 다른 부서, 이사회, 각종 위원회, 시장, 각 위원회 및 시의회에 대한 위원회의 연락 담당 역할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c) 위원회의 자금을 예산 배정 또는 예산 채택 후 이루어진 배정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 (d)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예산 수입 및 지출을 반영한 연간 예산안을 위원회에 권고하되, 가능한 한 시 일반예산과 관련하여 현장 제3절에 규정된 형식 및 날짜에 부합하여야 한다.

(e) 위원회의 모든 지출 내역을 확인·증명한다.

### 제35장 제3절 협력 및 조정

#### 제22.1520조 다른 시 부서와의 협력.

시의 모든 위원회, 사무실, 부서, 기관 및 국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직무 및 운영의 합법적이고 필요한 수행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 제22.1521조 다른 기관과의 조정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한 기후위기 대응, 유해 오염 규제 및 완화, 회복력 강화 조치를 담당하는 다른 공공 기관과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

**제3조 로스앤젤레스 행정법규 제22편 제13장에 "기후위기대응사무국"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제12절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 제13장 제12절 기후위기대응사무국

#### 제22.362조 기후위기대응사무국 및 사무국장

이에 따라 공공사업부 내에 공공사업위원회의 권한 하에 운영되는 기후위기대응사무국이 설치된다.

시장은 공공사업부 소속 직원 중에서 기후위기대응사무국의 장을 임명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시 현장, 행정 규정 및 시 조례에 규정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 시의 다른 위원회, 사무실, 부서, 기관 및 국의 적법하고 필요한 행위·직무 및 운영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 기후위기대응사무국을 관리하여 환경정의와 노동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시의 기후, 유해 오염 및 회복력 대응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전략적 실행 계획 및 일정 준비
- (ii)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유독성 오염물질의 측정 및 추적
- (iii) 비상 및 비상 외 상황에서의 기후 완화 대책 개발
- (iv) 연간 기후 배출량 및 유해 오염 예산안 마련
- (v) 회복력 및 적응 프로그램 개발

- (vi) 지역사회 총회, 시장실 산하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 담당 부서 과학자, 사회정의 및 환경정의옹호 활동가, 지역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연합체, 지역사회 의회 지속가능성 연합, 지역 비정부기구, 지역 의회, 주택소유자협회 및 사업단체와 함께 공공교육 및 홍보를 위한 이해관계자 절차를 조정
- (vii) 보조금 지원 기회 파악 및 추구
- (viii) 중요한 연구 필요성 파악 및 주요 연구를 권고
- (ix) 환경적 피해와 위험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받는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환경 또는 공중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 정책 및 활동에 환경정의 고려 사항 통합
- (x) 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구축강화하며, 환경정의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적 문제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
- (xi) 환경정의 및 기후 비상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 (xii) 환경정의 및 기후 비상 사태와 관련된 연구 및 평가 접근법 강화

- (b) 법률에 따라 부서의 직무 및 운영의 적법하고 필요한 수행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위기 및 유해오염의 완화·적응과 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부서 간 집중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의 부서들과 협력한다.
- (c) 시장과 시의회로부터의 지시 및 자문에 대하여 보고서와 그 밖의 문서를 통하여 대응한다. 여기에는 시 행정법규 제22편 제35장에 따라 설립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그 후임 위원회가 제시한 사항 중, 시의회 및/또는 시장이 기후위기대응사무국의 조치를 위하여 승인한 사항이 포함된다.
- (d) 시 행정 법규 제22편제35장에 따라 설립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그 후임 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2.363조 다른 시 부서와의 협력.**

시의 모든 위원회, 사무실, 부서, 기관 및 국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직무 및 운영의 합법적이고 필요한 수행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기후위기대응사무국과 협력해야 한다.

**제22.364조 다른 기관과의 조정.**

기후위기대응사무국은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한 기후비상사태대응, 유해 오염 규제 및 완화, 회복탄력성 조치를 담당하는 다른 공공 기관과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

제4조 분리 가능성 이 조례의 어떤 조항이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위헌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이 조례의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효 조항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조항은 시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조례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선언한다.

시의회는 본 조례 및 그 각 조항의 어느 하나라도 무효, 위헌 또는 기타 사유로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본 조례 및 각 조항을 채택했을 것임을 선언한다.

제5절 시 서기관은 이 조례의 통과를 증명하고 시의회 정책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는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배포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로스앤젤레스 시청 메인스트리트 입구에 있는 게시판에 1부, 로스앤젤레스 시청 동관 메인스트리트 입구에 있는 게시판에 1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기록 보관소 템플스트리트 입구에 있는 게시판에 1부를 각각 10일 동안 게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 번역문

제3장 기후행동

3.1 서론

배경

기후 변화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지구적 과제 중 하나이다.

기후 변화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온실가스(GHG), 즉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질소산화물(NOx)은 지구에 축적되어 열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기온 상승 속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온실가스 축적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457ppm이라는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1970년 330ppm, 1870년 286ppm과 비교).

온실가스 농도 증가는 평균 날씨의 변화 또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극한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홍수, 해안 침식, 가뭄, 강수량 증가 및 극한 기온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및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복합적인 사건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며 기후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기후 변화와 더블린시

더블린 시의회 기후행동계획(Dublin City Council Climate Action Plan, CCAP)(2019-2024)에서 인정했듯이,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미 더블린시에 상당한 속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빈도와 강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더블린 만의 평균 해수면은 전 세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년 동안 폭우가 내린 날의 수가 증가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더블린에서 발생한 극심한 홍수 횟수도 증가했다.

더블린시는 또한 극심한 기온 변화를 경험했는데, 예를 들어 2018년 2월에는 아일랜드 기상청(Met Éireann)이 사상 처음으로 눈에 대한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같은 해 6월과 7월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

더블린 시의회 관할 구역 내에는 아일랜드 인구의 15%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의회는 도시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원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은 깨끗한 공기, 건강 증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등 다양한 부가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 기업, 방문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센서 기술, 스마트더블린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과 같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 혁신적이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실현할 수 있다.

완화 및 적응

기후 변화에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 주요하고 상호 보완적인 대응책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UN IPCC)가 정의한 완화와 적응은 다음과 같다.

완화란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거나 흡수원을 늘리기 위한 인간의 개입을 말한다.

적응이란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와 그 영향에 대한 조정을 말한다. 인간 시스템에서 적응은 해악을 완화하거나 피하거나, 유익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자연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개입은 예상되는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적응을 촉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완화 조치가 우선시되어 왔지만, 이제는 적응 또한 완화만큼 중요하며, 두 가지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제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국가 및 지역 기후 정책

○최근 몇 년 동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유럽적,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에서 일련의 정책과 조치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사회의 탈탄소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유럽 차원에서는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2030 Climate and Energy Framework),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그리고 2030년까지의 EU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이 EU 회원국의 기후 행동을 위한 전반적인 틀을 제공한다. 유럽 그린딜의 주요 목표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 간의 순배출량이 '0'인 경제를 의미한다. 올바른 방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핏포 55 계획(Fit for 55 Plan)'은 EU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2019년 아일랜드 하원(Dil ireann)과 더블린 시의회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정부의 2021년 기후행동계획(Climature Action Plan, CAP)은 아일랜드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51% 감축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2021년 기후행동 및 저탄소 개발(개정)법(Climature Action and Low Carbon Development)에 명시되어 있다. CAP는 필요한 변화의 수준이 상당하며 그 부담이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한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적응 프레임워크(National Adaptation Framework)에 따라 2019년에 여러 정부 부처에서 12개의 부문별 적응 계획을 발표하여 각 부문이 직면한 주요 위험과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고 미래를 위한 기후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도시 차원에서 더블린시의회 기후행동계획(2019-2024)은 더블린 시의회가 저탄소 사회 및 경제로의 전환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기별로 검토되고 연간으로 보고되는 기후행동계획은 에너지 및 건물, 교통, 홍수 회복탄력성, 자연기반해법 및 자원 관리 분야에서 시의회가 추진하는 4가지 핵심 목표와 200개 이상의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더블린 시의회의 기후행동계획은 2030년까지 시의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블린시는 기후 및 에너지를 위한 시장협약(Covenant of Mayors)에 서명한 도시로서, EU 그린딜의 목표에 맞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더욱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기후행동계획은 시의 기후 행동 전략의 핵심 요소이며, 이 개발 계획에 포함된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공간 계획 및 탄소 배출 감소

공간 계획 정책 측면에서 볼 때, 국가계획 프레임워크(NPF)와 동부 및 중부 지역 의회의 지역공간 및 경제전략(RSES) 모두 기후 행동과 관련하여 도시 개발 계획의 역할을 명시한다.

국가계획 프레임워크의 국가전략성과(NSO) 8번 '저탄소 및 기후 회복탄력성이 있는 사회로의 전환(To Transition to a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t Society)'은 2050년까지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정책목표(NPO) 54번은 기후 정책 완화 및 적응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 행동을 계획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 공간 및 경제전략의 기후 전략의 핵심 요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의 달성 진척을 점검하고 2050년까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일랜드 동부 및 중부 지역의회(Eastern and Midland Regional Assembly, EMRA)는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을 작성하고 국가 계획에 따라 감축 목표를 합의할 것이다.

더블린 시의회는 지역공간 및 경제전략의 지역정책목표 3.6(RPO 3.6)에 따라 개발 계획이 탄소 감축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몇 년간 탄소 감축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이정표를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공간 및 경제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작업은 아일랜드 주택·지방정부·문화유산부(DHLGH)에서 마련한 지침의 발행에 좌우되며, 해당 지침은 도시 및 군 개발 계획 수립 맥락에서 전략적 토지 이용 지정 및 관련 교통 기반시설에 적합한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론 개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가 차원의 기후 행동 정책과 관련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더블린 시의회는 개발 계획이 주택·지방정부·문화유산부가 발행한 관련 지침에서 권장하는 기후행동 접근 방식과 일치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발 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것이다.

### 3.2 성과

9장에서 설명한 중요한 홍수 방지 및 폐기물 기반시설 구축 사업 외에도,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후행동 관련 정책 및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 기후행동 지역사무소(Climature Action Regional Office, CARO)

더블린의 4개 지방 자치 단체를 관할하는 기후행동지역사무소는 더블린 시의회를 주관 기관으로 하여 2018년에 설립되었다. 기후행동지역사무소의 역할에는 지방 당국이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대중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 더블린시 기후행동계획(2019-2024)

2019년, 코데마(Codema)는 더블린 시의회를 위해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은 에너지 및 건물, 교통, 홍수 회복탄력성, 자연기반해법 및 자원 관리의 5개 핵심 영역에 걸쳐 200개 이상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더블린 시의회와 관련 운영이 현재와 미래의 기후 변화 영향에 더욱 잘 적응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블린 시의 기후행동계획은 더블린 시의회가 서명한 기후 및 에너지를 위한 시장협약의 요건에 따라 완료되었다. 더블린시 기후행동계획에 대한 연차 보고서에는 기후 및 에너지를 위한 시장협약의 도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에 관한 최신 내용이 반영될 것이다

기후행동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더블린 시의회는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4%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29.8% 향상시켰으며, 2020년 목표인 33%를 8.6%포인트 초과 달성하여 총 41.6%의 감축률을 기록했다.

또한 더블린 시의회는 건물 개선 프로그램(Fabric Upgrade Programme)을 통해 사회주택 주거 단위를 지속적으로 개보수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8,000채 이상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거주자들의 쾌적성을 향상했다.

### WHO 브리드 라이프 캠페인(Breathe Life Campaign)

더블린 시의회는 지역 청소년의회(Comhairle na ng)와 함께 '브리드 라이프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더블린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및 지역 정책에 따라 개발 계획에서 탈탄소 구역, 저배출 구역 및 전략적 에너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미래 대기질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 더블린 지역난방 시스템(The Dublin District Heating System, DDHS)

더블린 시의회는 현재 도크랜드와 풀백 반도 전역의 주택과 사업체에 저탄소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더블린 지역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폐열은 풀베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회수되어 단열 파이프를 통해 시스템에 연결된 건물로 전달되며, 화석 연료 난방 시스템을 대체하고 대기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

### MODOS

더블린 시의회는 순환경제 교육 프로그램 MODOS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순환경제의 개념과 비용 절감, 경쟁 우위 확보, 미래 대비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이점을 설명하는 네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모듈 시리즈는 2020년에 37개의 중소기업에 제공되었다.

### 에너지 성능 계약

2016년 7월, 더블린 시의회는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에너지 성능 계약(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EPC)을 시행하여 시의 주요 레저 센터 3곳, 마르키에비츠 스포츠 및 피트니스 센터 (Markievicz Sports and Fitness Centre), 핑글라스 스포츠 및 피트니스 센터(Finglas Sports and Fitness Centre), 벨리문 스포츠 및 피트니스 센터(Ballymun Sports and Fitness Centre)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을 보장했다. 이러한 혁신 덕분에 더블린시는 2020년 아일랜드 지속 가능에너지청(Sustainable Energy Authority of Ireland, SEAI) 에너지 어워드에서 공공 부문 에너지 리더십 상을 수상했다. 에너지 성능 계약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블린 시의회는 더블린의 4개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대해 계약을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2030년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3.3 과제 - 도시의 탈탄소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석유, 석탄, 가스, 이탄과 같은 화석 연료는 산업 혁명 이후 개발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와 경제 성장을 분리하는 것이다.

더블린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물, 토지, 교통, 에너지, 주택 및 폐기물 처리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분산형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최근 채택된 기후행동 및 저탄소 개발(개정)법에 따라 아일랜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치 대비 51% 감축에 전념하고 있으며, 더블린시는 해당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더블린시 기후행동계획은 시의 건물, 운영 및 사회 주택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는 더블린시 전체 배출량의 4% 미만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96%의 배출량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로는 도시 전역의 기존 건축물 재고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화석 연료 기반 교통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있다.

### 홍수 및 홍수 위험

이 도시가 직면한 중요한 기후 관련 문제는 해수면 상승과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는 강우 현상으로 인해 홍수 및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도시의 주민, 재산 및 주요 기반시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홍수 위험 관리

대응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더블린시는 극심한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우수로 인한 홍수와 하천 범람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 기반시설, 문화유산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대기, 지표면, 토양 온도는 거의 항상 농촌 지역보다 높으므로, 연평균 기온 상승은 특히 더블린시에 새로운 과제를 초래할 것이다. 폭염과 한파를 포함한 극심한 기온은 상수도, 교통, 에너지와 같은 주요 기반시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블린시는 이러한 현상들에 적응하고 더욱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이는 자연기반해법(녹색 벽, 녹색 지붕, 녹색 기반시설)과 토목공학적 대응방안(홍수 방지벽, 방벽,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도시 환경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를 선택하고, 자전거를 더 많이 타고 더 많이 걸고, 물과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등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포함한다.

### 3.4 전략적 접근 방식

NPF와 지역공간 및 경제전략에서 제시된 실행 영역과 더블린시 기후행동계획에 명시된 영역을 고려하여, 해당 장의 다음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 영역을 다룬다.

- 지속가능한 정주 패턴
- 건축 환경
- 에너지
- 폐기물
- 지속가능한 교통
- 홍수 회복탄력성과 수자원
- 녹색 기반시설 및 생태계 서비스.

기후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은 더블린이 저탄소이며 기후 회복탄력성이 있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의 모든 장에 기후 완화 및 적응 원칙을 통합하는 것이다.

해당 장에서는 기후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지만,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책 요건은 각 개발계획의 개별 장에 제시되어 있다.

### 3.5 정책 및 목표

아래에 제시된 정책 및 목표는 국가 기후행동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 더블린 시의회 기후행동계획 및 국가정책 프레임워크와 지역공간 및 경제전략에 명시된 기후행동 원칙에 부합한다.

2022년 6월에 발간된 「계획 당국을 위한 개발계획 지침」과 국가기후행동계획의 연례 갱신 등 기후행동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더블린 시의회는 향후 새로운 법률 또는 정책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해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 3.5.1 지속가능한 정주 패턴

정주 패턴, 건축 형태, 이동성 및 도시 내 토지 이용의 혼합은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편리한 대중교통(버스/철도)을 통해 거주하고 일하며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하면 자동차 이용 필요성과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15분 도시'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또한 정부의 '2021년 모두를 위한 주택 계획(Housing For All Plan)'에서 제시된 전반적인 접근 방식과도 일치하며, 해당 계획은 집약적 성장이 저탄소 기후회복탄력적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장 핵심 전략은 국가계획 프레임워크 및 지역 공간 및 경제 전략에 맞춰 브라운필드 재개발 및 기존 시가지 내 충전 개발을 포함한 압축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정주 전략을 제시한다.

제4장 도시의 형태와 구조는 기존 도시의 기개발 범위 내에 위치한 토지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해당 전략은 편리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이동을 우선시하며, 보행자 친화적인 복합 용도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전략은 제8장 「지속 가능한 이동과 교통」에도 반영되어 있다.

#### 3.5.2 건축 환경

건축 환경의 현재와 미래 형태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신규 개발과 기존 개발 모두 기후 변화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제15장 개발 관리에는 도시 개발 제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척도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장의 핵심 지침 원칙은 기후 행동이 개발 관리 과정에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기후 변화 완화 조치와 건축 환경

기후 변화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더블린시 기후행동계획(2019)에 따르면 더블린시 지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가 기존 상업 및 주거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문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모두를 위한 주택 계획'은 2030년까지 아일랜드 내 50만 가구를 B2 등급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BER)으로 개조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기존 건물의 대규모 개조 계획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수자원 등의 자원 사용 효율을 개선하며, 기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개조 프로젝트는 탄소 발자국을 더욱 줄이기 위해 분산형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블린 시의회는 진행 중인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미 약 9,000가구에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건축 환경과 관련된 또 다른 핵심 완화 조치는 기존 구조물의 '내재 탄소'와 기존 구조물 재사용에 비해 신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을 고려하여 대규모 철거 및 재건축 공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 완화 조치는 도시의 새로운 개발 사업의 건물 설계, 건설 및 운영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는 건물 구조,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 에너지 생산 및 자원 보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것이다.

모든 신규 개발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후 변화 완화 조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더블린 지역난방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을 고려할 때, 도시 내 신규 개발 사업의 난방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폐열 및 지역난방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후 적응 조치와 건축 환경

기후 변화 적응 조치 및 건축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 및 미래 개발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행동 변화를 장려하고 시민들에게 극한 기상 현상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비구조적 조치', 녹색 기반시설 및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Sustainable Drainage Systems, SuDS)을 포함하는 '녹색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 제방 및 저류조와 같은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회색 조치'가 포함된다.

### 기후행동 에너지 성명서

향후 모든 개발 사업이 건축 환경의 에너지 효율 원칙과 효율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신규 개발 사업 또는 중요한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신청서는 제안된 개발 사업의 전설계 설명서의 일부로 기후행동 에너지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5장 15.7절 참조)

본 성명서에는 개발과 관련된 예상 에너지 성능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개요와 함께, 해당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난방 및 기타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의 잠재력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기후행동 에너지 성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장에 포함되어 있다. 개발 표준.

### 3.5.3 에너지

화석 연료에서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루는 것은 기후행동 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제9장에서 언급했듯이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면 에너지 부문이 더욱 다양화된 저탄소, 무탄소 및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탈탄소화된 분산형 공공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탈탄소 구역과 같은 지역 기반 계획과 지속가능에너지청이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공동체(Sustainable Energy Communities)와 같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은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의해 끊임없이 보충되는 천연자원에서 나오므로 화석 연료보다 더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 재생에너지원에는 풍력, 태양 에너지, 수력(수력, 파력, 조력), 지열 에너지(지표면 아래의 열), 대기 에너지, 바이오가스(혐기성 소화) 등이 있다.

국가기후행동계획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성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경우, 전력 수요 중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 전력망 강화 및 현대화, 새로운 전력 수요 관리 방식, 재생에너지 발전, 소규모 발전 및 지역 사회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리고 기타 지원 조치 등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더블린시의 공간적 맥락에서 주요 재생에너지원은 태양열 발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해상 풍력 에너지이다. 또한, 지열 에너지는 도시의 잠재적 미래 중요 저탄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와 관련하여 태양광 패널(PV), 태양열 패널, 태양열 발전소 및 태양 에너지 저장 시설을 포함하여 태양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다. 소규모에서 중규모의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시 지역, 특히 대규모 산업 시설의 옥상 공간에 적합하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신규 개발 사업에 설치하거나 기존 건물에 개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풍력 에너지

풍력 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국가 목표 달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재생 가능 풍력 발전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업 지역 및 공업 단지에서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현장 및 소규모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도시의 주거 지역에서는 현재 2001년 제정된 계획 및 개발 규정(개정판)(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s)에 따라 소규모 풍력 발전이 허용된다.

아일랜드해에 있는 더블린시 해안에서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블린시는 통신-에너지천연자원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Energy and Natural Resources)가 2014년에 발표하고 2018년에 개정된 '해상재생에너지 개발계획 (Offshor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 OREDP)'의 이행을 지지하며, 아일랜드해에서의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준국가 기관과 협력할 것이다.

더블린 시의회는 국가 해양계획 프레임워크(National Marine Planning Framework)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경우 해상 풍력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육지 측에 전력망 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지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지구 표면 아래에 저장된 열에너지로, 난방 또는 전력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기후행동계획과 2019년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역난방을 위한 지열 자원 평가(Assessment of Geothermal Resources for District Heating)"를 실시했으며, 아일랜드 지열 에너지 정책 및 규제 체계 로드맵(Roadmap for a Policy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Geothermal Energy in Ireland)도 마련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도시, 주거, 산업 지역의 대규모 또는 지역난방 및 냉방에 적합한 저온에서 중온 지열 에너지 자원(깊이 400m 이상)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열 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열 에너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및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 기타 재생에너지원

위에 언급된 주요 재생에너지원 외에도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전반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 다른 재생에너지원이 존재한다. 한 가지 예로 지역공간 및 경제전략의 지역정책목표 10.1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수 슬러지에서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 있다.

### 지역난방 및 폐열

지역난방 및 폐열 회수는 매우 중요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지역공간 및 경제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더블린 지역난방 시스템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난방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지역 가정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더블린의 수입 에너지 및 연료 의존도를 줄인다. 지역난방은 재생에너지 및 폐열 회수와 같은 저탄소 열원을 활용하여 더블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를 완화한다.

2021년 국가기후행동계획은 지역난방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최대 2.7TWh의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국가 난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기후행동계획에는 지역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183번 조치는 "국가, 지역 및 지방 계획 체계가 압축적인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적합한 경우 지역난방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보장한다"이다.

기후행동계획은 아일랜드의 지역난방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평가 완료 등 지역난방 정책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작업을 의미한다. 이는 개발 중인 두 개의 지역난방 프로젝트 또한 지칭하며, 그중 하나는 풀베그와 도크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더블린 지역난방 시스템이다.

이 네트워크의 주요 초기 열 공급원은 풀베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로, 90메가와트의 열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 내 5만~8만 가구의 난방 수요에 해당한다.

더블린 지역난방 시스템의 1단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노스 로츠 및 그랜드 캐널 전략개발구역(SDZ)과 풀베그 웨스트 전략개발구역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더블린 지역난방 시스템의 1단계가 구축되면, 다음 개발 단계에서는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확장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도크랜드 전략개발 및 재생구역(Strategic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Area, SDRA)을 구성하는 전략개발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확장하고, 기존 및 신규, 지역 및 공동 난방 개발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도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코데마에 따르면 더블린시는 도시 건물 전체 난방 수요의 1.75배에 달하는 열을 폐열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코데마의 공간에너지수요분석(Spatial Energy Demand Analysis, SEDA)에 따르면 더블린 시 지역의 75% 이상이 지역난방 시스템 연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만큼 높은 열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린 시의 지역난방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개발 및 재생구역 내의 주요 신규 주거 및 상업 개발 사업들이 가능한 한 '지역난방 설치 가능' 상태로 건설하여 지역 또는 시 전체의 지역난방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안된 에너지 및 난방 솔루션은 이와 유사하게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특정 전략개발 및 재생구역에 대한 요구 사항과 개발 사업이 '지역난방 가능'으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3장 '전략개발 및 재생구역'과 제15장 '개발 표준'에 제공됨

제안되거나 기존에 건설 중인 개발 사업 및 시설(예: 데이터 센터)에서 버려지는 열을 포착하여 활용하고, 관련 에너지 효율 규정을 준수하여 폐열을 현장 또는 인접하거나 인근 부지에서 사용하도록 장려

### 에너지 계획, 전략적 에너지구역 및 탈탄소 구역

도시 전체는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서 저탄소 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과 계획이 도입되었거나 준비 중이다.

### 전략적 에너지구역

진행 중인 해당 작업은 지역공간 및 경제전략의 지역 정책 목표 7.35에 따라 잠재적인 '전략적 에너지구역'을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목표는 동부-중부 지역의회는 지역 내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대규모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적합한 지역, 도시 및 농촌 환경에서의 지역 사회 및 소규모 에너지 생산의 역할, 산업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전략적 에너지 구역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역 주도 사업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중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참여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지속가능에너지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공동체 이니셔티브를 들 수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에너지 사용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 사회에 이익을 주며 에너지 사용량 감소, 청정 재생에너지 사용, 스마트 에너지 사용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 탈탄소화 지역

2021년 기후행동계획의 80번째 조치는 지역 차원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관할 구역 내 최소 한 곳에 탈탄소 구역(Decarbonising Zone, DZ)을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탈탄소 구역은 지방 당국이 지정한 공간 영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후 완화 조치가 공존하여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 관련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더블린 시의회는 링센드, 아이리시타운 지역을 탈탄소 구역으로 지정하고, 코데마 및 기후행동지역 사무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에너지 기술과 계획을 활용하는 시범 사업 개발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더블린 지역에너지 마스터플랜

코데마는 더블린 지역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개발했다. 이 계획은 더블린 지역이 2030년과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증거 기반의 비용 산정 방안을 제시하며, 더블린 4개 지방 자치 단체 지역에 대한 공간 에너지수요분석에서 확인된 에너지 분야를 기반으로 한다.

### 3.5.4 폐기물

#### 순환경제 촉진

제9장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시설'과 제15장 '개발 표준'에서는 순환 경제 원칙에 기반한 보다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식을 통합하고자 한다.

국가기후행동정책은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폐기물 분야에서 정책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포괄하는 '순환 경제'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폐기물과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설계, 제품과 자재의 지속적 사용, 자연 시스템의 재생기후행동이다.

정부가 이러한 원칙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순환경제 및 기타조항법(Circular Economy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이 제정되어 아일랜드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아일랜드 국가 폐기물 정책을 제시하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관리 행동계획(Waste Action Plan for a Circular Economy)에 제시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 건설 및 철거 폐기물

폐기물관리 행동계획은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 플라스틱 등과 관련된 정책 조치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계획 시스템과 관련하여 건설 및 철거 폐기물 문제를 다루고 있다.

폐기물관리 행동계획은 건설 및 철거 폐기물 프로젝트를 위한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2006년 모범 사례 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2021년 건설 및 철거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관리 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모범 사례 지침 발간으로 이어졌다. 또한, 폐기물관리 계획은 건설 및 철거 폐기물 지침을 법적 계획 지침의 틀에 포함시켜, 계획 요건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의도를 명시한다.

### 3.5.5 지속가능한 운송

지속가능에너지청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운송 부문은 아일랜드에서 단일 최대 에너지 소비 부문으로, 2018년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차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볼 때,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운송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4%를 차지했으며, 이는 농업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본 자

료는 개인 차량을 이용한 교통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제8장 지속가능한 이동 및 운송은 이동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자가용 이용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제8장 8.5.6절 지속가능한 방식 참조.) 또한 해당 보고서는 전기 자동차 및 대체 연료와 관련된 최근 정책 및 기술 발전을 다루며, 이는 도시 전반의 교통 부문 탈탄소화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 및 전기 자동차

2021년 국가 기후행동계획은 개발의 공간적 특성, 도시 구조 및 전반적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전기차 보유 대수의 대폭 증가와 같은 저탄소 기술 조치를 결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전기차와 저공해 차량(LEV) 94만 5천 대를 도로에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제시한다.

전기 자동차의 이러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계 및 위치 선정 고려 사항과 개정된 계획 및 개발 규정(2001)을 고려하여 충분한 충전소와 급속 충전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충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충전소 제공 방식의 개발도 고려될 것이다.

### 3.5.6 홍수 회복탄력성 및 수자원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강우 현상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블린의 취약 지역에서는 홍수(강우, 하천 및 해안, 지하수 및 하천망 범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 변화 예측에 따르면 강수량의 계절성도 변화하여 겨울철 강수량은 증가하고 여름철 강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사람, 물 공급 및 안보를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 생태계 및 재산에 위협을 가한다.

홍수지침(Floods Directive)은 회원국들이 전략적인 홍수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홍수 위험 관리 조치를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사업국(Office of Public Works, OPW)은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 지도와 홍수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는 관련 하천 유역 내 홍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홍수 완화 계획 그리고 홍수 방어 시설(도시 기반시설)과 같은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의 일환인 녹색 기반시설은 홍수 위험 감소 및 통합 수자원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색 기반시설은 물을 차단하고, 임시 및 영구적인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물이

배수구로 향하는 대신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배수구로 유입되는 물의 속도와 양을 줄인다. 또한, 녹색 기반시설은 지표면 유출수에서 오염 물질과 퇴적물을 걸러낼 수 있으며, 빗물을 포집하여 재사용 및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하천 회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홍수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응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하천 유역과 조경을 보호하고 하천 유역 내에 습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홍수 관리 조치를 제공하면 유출량을 줄이고, 토양으로의 물 침투를 촉진하고, 하천으로의 유출 속도를 늦추고, 홍수 흐름의 하류 이동을 지연시켜 하천 홍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 계획은 전략적 홍수 위험 평가(SFRA)를 거쳤으며, 해당 평가는 계획 당국 지침(DEHLG 및 OPW, 2009)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개발 계획에는 SFRA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개발에 적합한 부지를 구역으로 지정하고 홍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9장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시설 및 홍수 위험 보고서는 도시의 하천에 대한 하천 회랑 정책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또한 이 문서에는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부록 12 참조), 옥상 녹화(부록 11 참조), 지표수 관리 계획(부록 13 참조)에 관한 정책 및 목표와 오수와 지표수 배수 시스템의 분리, 물 절약과 해안 지역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 3.5.7 녹색 기반시설 및 자연기반해법

녹색 기반시설은 도시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추도록 돕는 동시에 기후 변화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도시의 녹색 기반시설에는 자연 및 반자연적 요소(해양 환경, 공원, 삼림지, 수역 등)와 자연기반시설(옥상 녹화, 가로수 식재 공간, 빗물 정원, 녹색 벽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연 자산과 도시 녹화 요소는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능과 이점(생태계 서비스)을 제공한다. 도시의 나무, 초목, 토양은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며, 증발 냉각 효과와 그늘을 제공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귀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식지를 늘리고 복원하며 연결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이다.

개인 경작지와 공동체 정원 제공은 식량 생산을 촉진하여 식품 운송 거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와 같은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활동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제10장 녹색 기반시설 및 레크리에이션은 도시의 기후 행동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형 녹색 기반시설 및 도시 녹화 정책과 목표를 제시한다.

곧 발표될 더블린시 녹색 기반시설 전략은 더블린시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2021-2025)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지원할 것이다.

### 3.5.8 기후행동 정책의 통합 - 기후행동 '주류화'

이 개발 계획에서 채택된 기후행동 접근법은 계획의 각 장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완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뒷면의 요약표는 개발 계획의 각 장이 기후행동 노력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각 장이 해당 장에서 다루는 다양한 기후행동 정책 분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 장별 기후행동 조치 요약

제1장 전략 맥락과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의 압축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도시 통합을 지원한다.</li> <li>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개발을 지원한다.</li> <li>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li> </ul>
제2장 핵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도심 재개발 및 기존 부지 개발을 통해 주요 교통망을 따라 계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압축적인 성장을 촉진한다.</li> <li>건강한 도시 조성 및 15분 도시 구현을 지원한다.</li> </ul>
제3장 기후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블린 시의회 기후행동계획 이행을 지원한다.</li> <li>개발 계획에 기후행동 조치를 통합하도록 지지한다.</li> <li>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한다.</li> <li>지역 및 도시 전체의 에너지 전략과 계획을 지원한다.</li> <li>폐기물에 대한 순환경제 접근 방식을 지원한다.</li> <li>보다 지속 가능한 이동 및 교통 수단으로의 전환과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한다.</li> <li>자연기반해법 및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 활용을 포함하여 홍수 위험 완화 및 적응 조치 개선을 지원한다.</li> <li>자연기반해법 및 도시 녹화의 원칙을 지원한다.</li> </ul>
제4장 도시의 형태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지향적인 기반시설 투자와 대중교통의 최적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성장을 주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지원한다.</li> <li>대중교통 기반시설과 개발이 긴밀히 연계되는 보다 압축적인 도시 조성을 지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분 도시 원칙에 따라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가까우며 다양한 지역 사회 기반시설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동네 조성을 지원한다.</li> <li>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녹색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개발을 촉진한다.</li> </ul>
<b>제5장 양질의 주택과 지속 가능한 주거 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분 도시 접근법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고품질 주거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압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li> <li>건강한 공간 조성 및 지속가능한 동네 개발에 있어 기후행동 조치 통합을 지원한다.</li> </ul>
<b>제6장 도시 경제 및 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변화에 탄력적인 저탄소 도시 경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li> <li>재생에너지, 건물 개조,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설을 포함한 '녹색 경제'의 성장을 지원한다.</li> <li>도시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 환경'과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li> </ul>
<b>제7장 도심, 도시형 마을 및 소매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 지역의 통합 및 활성화와 지속 가능하고 복합 용도로 활용되며 활기찬 지역 사회 조성을 지원한다.</li> <li>대중교통 접근성, 도심의 중요성, 기존 및 신흥 중심지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li> </ul>
<b>제8장 지속가능한 이동 및 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이용과 교통의 통합을 지지하고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고밀도 개발을 장려한다.</li> <li>15분 도시 모델에 기반하여 이동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대중교통 등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행동 변화를 장려한다.</li> <li>차량 탈탄소화와 전기차 충전 관련 지역 전략을 포함한 저탄소 이동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li> <li>상품 배송 방식에서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는 솔루션을 지원한다.</li> </ul>
<b>제9장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시설과 홍수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 친화적이고 적응형 홍수 위험 관리의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li> <li>수로 및 수역의 관리와 보존을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 관리와 통합하도록 지원한다.</li> <li>순환 경제 원칙에 따라 도시 내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폐기물관리 방식의 촉진 및 시행을 지원한다.</li> <li>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방지를 하고, 재활용, 재사용 및 용도 변경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원한다.</li> <li>건축 환경 및 자연 환경 내 적절한 위치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및 생산을 지원하고, 플러그 반도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기반시설 허브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li> </ul>
<b>제10장 녹색 기반시설 및 레크리에이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블린시 2021-2025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을 지원한다.</li> <li>광범위한 지역 녹색 기반시설 네트워크와 연계된 다기능 녹지 공간의 체계적이고 관리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개발, 신성장 지역에 녹색 기반시설과 생태계 서비스 접근 방식 통합을 지원한다.</li> <li>도시 내 수로와 수변 생태계의 보호, 유지, 개선을 지원한다.</li> <li>해안선과 해양 환경을 개방 공간이자 소중한 자연 서식지로서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 지원한다.</li> <li>신규 개발 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나무 심기를 의무화하고, 신규 개발의 일환으로 기존 나무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li> </ul>
<b>제11장 건축유산과 고고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물을 보존하고 최상의 건물 보존 원칙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지원한다.</li> <li>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기후 변화가 역사 건축물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li> <li>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고고학 유적의 감시 및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 유적 기금 시행을 지원한다.</li> </ul>
<b>제12장 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블린시의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li> <li>지역 예술과 문화 시설을 제공하여 활기찬 복합 용도 도시 마을 조성 사업을 지원한다.</li> </ul>
<b>제13장 전략적 개발 및 재생 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분 도시 원칙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한다.</li> <li>고품질 공공 녹지 공간과 소규모 녹화 사업을 포함한 녹화 및 생물 다양성 증진 조치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li> <li>지속 가능한 지표수 관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 설치를 제공한다.</li> <li>하천 생태계 개선을 위한 기회를 증진한다.</li> <li>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한다.</li> <li>가능한 경우, 지역난방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며, 기존 및 계획 중인 지역난방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li> </ul>
<b>제14장 토지 이용 구역 지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장소에 특정 용도 구역을 조성함으로써, 조밀하고 통합적이며 기후 변화에 탄력적인 도시 개발을 지원한다.</li> <li>기존 중심지의 통합과 미개발지의 재개발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촉진한다.</li> <li>녹색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사회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li> </ul>
<b>제15장 개발 표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적절한 재생 가능 기술을 활용하는 개발을 지원한다.</li> <li>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지속가능 조달 자재의 사용을 지원한다.</li> <li>저탄소 시멘트, 재활용 자재, 등 친환경 건축 자재와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제품의 사용을 장려한다.</li> <li>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접근성이 좋은 개방 공간과 조경을 제공하는 개발을 장려한다.</li> <li>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을 포함한 지표수 관리 원칙을 통합하는 개발을 요구한다.</li> </ul>
<b>제16장 모니터링 및 구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에 명시된 기후행동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한다.</li> </ul>

# 유권해석 동향

1

##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동대문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 의견 26-0040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회신일자 2026. 2. 12.]

### ◇ 질의요지

-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동대문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먼저, 이 사안에서 관내 체육시설의 성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관내 체육시설은 동대문구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지방자치법」 제16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제1항), 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고,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연번	질의기관	질의내용	회신일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동대문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6. 2. 12.	
2	경상남도 거창군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26. 2. 11.	
3	경기도 성남시	조례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44조 등 관련)	'26. 2. 11.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 등 관련)	'26. 2. 9.	
5	충청북도 청주시	공공장사시설의 환경 유지 및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공공장사시설에 조화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6. 2. 5.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육시설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면서 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대문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법제처 2024. 8. 12 의견제시 24-0261 참조).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안건번호 : 의견 26-0052 /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2026. 2. 11.]

◇ **질의요지**

- 가.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나. (질의 가에서 가능하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0. 16. 의견제시 25-0316 참조).

이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의 사무가 거창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해당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제4호너머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요지와 같은 사무는 거창군 소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규정 내용이 상위법령인 재난안전법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피명령 발령과 강제대피 조치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재난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은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조례 입안 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에서 과태료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법 제4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고, 제41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 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수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난안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에 동일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조례에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점,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 체계적으로나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각주: 법제처 2022. 4. 12. 의견제시 22-0102 참조) 조례를 입안 시 충분히 검토·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 13.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 ③ (생략)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거. (생략)
- 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다. (생략)
5.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 3

### 조례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44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결 26-0031 /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 2026. 2. 11.]

#### ◇ 질의요지

○ 조례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급하는 사무가 성남시의 자치사무인지에 대해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로서 성남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에서는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원하려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자녀 대학 입학 등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생활비의 일부를 지출하지 않게 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소속 공무원에게 변형된 보수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9. 10. 2. 의견제시 19-0289 참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수당의 일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 국가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각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규정하였으나,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2021. 1. 5.에 해당 수당을 폐지함.)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도 이러한 지원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학등록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수당”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보입니다(각주: 「지방공무원법」 등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에 대한 자녀 대학등록금은 수당의 일종이라는 입장임). 또한, 공무원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법령에서 별다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분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삭제 <1990. 1. 15.>
5. 삭제 <1990. 1. 15.>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 ② 재외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된 재학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해당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학비를 이미 낸 후 해당 취학 자녀가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 5.>
- ⑥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2021. 1. 5.>
- ⑦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5항·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 ⑧ 소속 장관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무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 26-0003 /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2026. 2. 9.]

**◇ 질의요지**

-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회의에서 1회용품(각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함.)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질의 가에서 규정할 수 없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법제처 2025. 10. 16. 의견제시 25-0316 참조).

이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각각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이하 “보조금수령기관등”이라 한다)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이하 “1회용품사용 줄이기계획수립등”이라 한다)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조금수령기관등이나 수탁기관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회용품사용줄이기계획수립등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제4호)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제주도조례안”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및 예산 수립이고,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이라는 점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각각 다른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자원재활용법에서는 그 밖의 1회용품사용줄이기계획수립등과 관련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시책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순환경제사회법 제6조제5항에서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제1항)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와 같이 순환경제사회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각각 사업자의 책무와 국민(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이러한 책무 규정이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서 책무 규정 외에 사업자 등에게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보조금수령기관등이나 수탁기관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면 도지사가 1회용품사용줄이기 계획수립등을 조건으로 행사·회의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행사·회의와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1회용품사용줄이기계획수립등을 조건으로 행사·회의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제1항)와 재량이 없는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제2항)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할 것입니다(제4항 각 호).

이와 같은 지방보조금법과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도지사가 행사·회의와 관련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 교부 목적과 관련해서 행사·회의를 주관하는 기관·단체가 1회용품사용줄이기계획수립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조례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지사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회의의 그 내용이나 성격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회용품사용줄이기계획수립등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건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행사·회의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기관·단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3조 및 제17조 제4항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1회용품사용줄이기계획수립등을 조건으로 행사·회의와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마련된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제1호), 위탁기간(제2호), 위탁사무 및 그 내용(제3호),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조례와 지방계약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도지사가 같은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위탁협약(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조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행사·회의와 관련된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1회용품사용줄이기계획수립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협약에 포함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보조금 교부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조례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회의와 관련한 위탁사무의 내용이나 성격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단체가 1회용품사용줄이기계획수립등을 해야 도지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도지사가 1회용품사용 줄이기계획수립등을 위탁협약에 포함할지 여부를 위탁사무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나, 제주자치도 조례안 제7조제2항과 같이 규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아보이므로, 아래의 검토안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③ (생 략)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생 략)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5 공공장사시설의 환경 유지 및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공공장사시설에 조화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 의견 26-0006 /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2026. 2. 5.]

◇ **질의요지**

- 공공장사시설의 환경 유지 및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공공장사 시설에 조화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먼저, 공공장사시설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8조의2제1항)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는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제13조제2항제2호사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 사안의 경우, 장사법에는 공공장사시설에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장사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주시장이 공공장사시설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조화의 반입을 금지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입니다.

다만, 공공장사시설에 조화의 반입 전체를 제한하는 경우 고인을 추모하려는 주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화를 공공장사시설에 방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아닌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것이 법 체계상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바. (생략)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 차. (생략)

3. ~ 7. (생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경기도의회 주요 입법예고

- 의원발의안 17건 (제정조례안 13건, 개정조례안 4건)-

## ■ 제정조례안

### 1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4. 9. / 발의자 : 이상원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 2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4. 9. / 발의자 : 김재훈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4. 7. / 발의자 : 오창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최근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꿀벌을 비롯한 수분곤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균형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과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나. 특히 공원, 가로수 등 공공녹지의 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수분곤충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방향 감각 상실, 번식률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꿀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주로 양봉산업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녹지 관리 과정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라. 이에 공공녹지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체계 도입, 방제 정보 공개, 수분곤충 보호 기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공공녹지에서의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지양하고 저독성·친환경 자재 우선 사용 등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 다. 병해충 방제 시 통합해충관리(IPM) 체계 도입 및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라. 공공녹지 중 일부를 친환경 방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사용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

### 4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4. 7. / 발의자 : 윤종영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 ◇ 개정이유

-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연구학교 지정·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5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4. 7. / 발의자 : 윤종영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농업생명자원은 경기도 농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익적 자산으로서, 종자·미생물·재래종 등 다양한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 대비에 필수적임
-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 보존·관리 지원, 재래종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 주요내용

- 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나.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재래종 보전,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지원사업 수행 주체(농업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마. 기본계획 자문, 지원사업 평가·심의 등 조례 운영의 전문성과 정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생명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 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6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4. 6. / 발의자 : 이영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최근 청소년·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동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나. 2025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학생이 내리막 구간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브레이크 미장착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동장치 미장착 운행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일반 자전거에 비해 속도 조절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일반 자전거의 안전장치 미장착 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라. 이에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사업, 우선관리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픽시 자전거 이용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우선관리구역 지정 및 학교 등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정부·도내 시군·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7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4. 6. / 발의자 : 임창휘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기반시설은 미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부각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저장·처리·분석 기능이 집적된 데이터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나. 특히 데이터클러스터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이 집적되어 기술 혁신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네트워크·전력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다. 개발사업구역은 주거·업무·산업·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공간으로서 데이터기반시설의 계획적 배치와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입지이나, 데이터기반시설의 입지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 라. 이에 경기도 내 개발사업구역에서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기반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 경쟁력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개발사업구역에서 데이터기반시설의 집적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지원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 나. 개발사업구역,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기반시설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기반시설 집적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라. 데이터기반시설 집적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마. 데이터기반시설 집적을 위한 도시공간 활용 및 도시형공장 등 용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바. 관계 기관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력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사. 사업시행자에 대한 데이터기반시설 도시공간 확보 및 기반시설 연계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아.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자.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8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4. 3. / 발의자 : 장민수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정보 검색, 과제 작성, 콘텐츠 제작 등 일상 전반에서 청소년의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음
- 나.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허위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윤리 교육은 미흡한 실정임
-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라.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교원 및 지도자 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자.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9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30. / 발의자 : 안광률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학교 현장의 직무 환경 특성에 따른 고위험 스트레스로 인해 교직원들이 정서적 소진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 나. 이에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적용 대상이 되는 교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심리검사, 전문 상담 및 의료적 치료 지원 등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마음건강 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등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 10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23. / 발의자 : 유호준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경기도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나. 그러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절차, 장례 절차, 시신 송환 등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지원 매뉴얼 마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11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18. / 발의자 : 김도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최근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학교명 사용 범위, 학교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행정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나. 이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율적 협력 체계(업무협약) 및 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분쟁을 예방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학교명(후원명칭) 사용의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승인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협조 근거를 정비함(안 제6조).
- 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12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18. / 발의자 : 황세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도, 시·군 상호간 부담할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 복지사업으로, 수급자의 공공 지원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 이러한 복지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변동폭이 클 경우,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다. 이에, 도와 시·군 간 적정한 부담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담 비율을 정함(안 제2조).

## 13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16. / 발의자 : 김태형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경기도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양자산업은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큰 분야임. 이로 인해 보조금·출연금 등 단년도 예산 위주의 재정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규모·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나. 이에,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과 연계한 단계별 투자를 통해 도내 양자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자원 확보, 투자 대상 설정,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양자펀드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경기도가 양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다. 양자펀드의 재원과 투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라. 양자펀드의 전문적 운용을 위한 위탁, 운용성과 점검·평가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마. 양자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원칙과 비공개 대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양자펀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 개정조례안

### 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31. / 발의자 : 김현석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생배치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나.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 현상과 입학 후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다. 이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시 학생배치 운영 및 비선호 학교 해소를 위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학전형 실시 지역에 대한 운영 현황 점검과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배치 운영의 합리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학생 수 변화, 통학 여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비선호 학교 발생 여부 등 학생배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 나. 입학 후 전학·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학생배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3).

## 2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30. / 발의자 : 김성수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현행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 하였으나, 약 7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여 정책 연구용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요건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다. 정책연구용역의 품질 향상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유사성검사 실시 근거가 부재 하고, 총괄부서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음.
- 라. 이에 정책연구용역의 선정부터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정책연구과제"와 "과제담당관"의 개념을 신설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4조 신설).
- 다.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라.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정책연구과제 심의 요청서의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가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 마.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사항을 위원회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와 총괄부서 협의로 가능한 경우로 구분하고, 계약 체결 전 과제 철회 절차를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 바.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검사하고, 부정행위 발견 시 시정조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 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시 사유 및 공개 시점 적시 의무 를 신설함(안 제21조).
- 아. 총괄부서의 장이 매년 전년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 3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26. / 발의자 : 남경순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을 전략적 으로 추진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6년 2월 일부개정 함.
- 나. 경기도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규제종합정비계획, 규제 등록 방법, 심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부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다. 또한,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 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 등 도 전반의 규제관리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라.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관리 및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
- 나.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규칙 등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완화·폐지하는 경우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안 제3조)
- 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비용·편익, 대체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안 제4조~6조)
- 라.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여 일정 기간마다 규제를 재검토(안 제7조~제9조)
- 마.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 4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18. / 발의자 :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여가-레저 환경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도지사 책무 반영(안 제3조제2항).
- 나.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 다. 낚시터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 월간 입법동향

□ 발행월 : 2026년 4월

□ 발행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법 제 과 장 박 경 순

법제운영팀장 김 호 성

입 법 조 사 관 유 승 규 황 대 석

심 지 연 김 흥

□ 연락처 : 031-8008-7285 (fax. 031-8008-7289)

※ 본 자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http://www.ggc.go.kr))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월간입법동향 페이지에서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